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7240 |
|----------|-------|

발의연월일 : 2026. 3. 4.

발 의 자 : 이용우 · 오세희 · 민병덕  
김남희 · 김남근 · 한준호  
이주희 · 이강일 · 박찬대  
박지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권력 집중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함.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함에 따라 ‘기소를 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인권 보호보다는 성과 중심의 과잉 수사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에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그리고 사법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전문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고자 함.

공소청 신설을 통해 검사는 직접 수사에서 탈피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을 철저히 감시

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공소청장 후보추천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운영, 외부 감찰관 도입, 정치적 관여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정 등을 통해 공소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소청의 설치 및 관할 체계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두고, 지역공소청·지청의 위치·명칭은 대통령령으로,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 관할에 연동하여 정함(안 제2조제1항~제3항).

### 나. 공소청 공무원의 기본의무와 권한남용 금지

인권보호·적법절차 준수·공정·중립 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를 명문화함(안 제3조).

### 다. 검사의 직무 범위 규정

공소 제기·유지, 영장 청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을 검사 직무로 열거함(안 제4조).

### 라. 지휘·감독 구조 및 이의제기 제도

법무부장관의 일반 지휘와 구체 사건에 대한 공소청장 단독 지휘를 구분하고(안 제7조), 검사의 상급자 지휘·감독 및 구체 사건 지휘

에 대한 이의제기권 · 불이익 금지를 둠(안 제8조, 안 제9조제1항~제3항).

마. 공소청장 설치, 지위 · 임기 및 임명 절차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보고, 임기 2년(중임 불가)으로 하며, 후보추천→법무부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대통령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탄핵 가능 및 차관급 대우를 정함(안 제11조제2항~제7항).

바. 공소청 내부 조직 및 정보조직 설치 제한

차장 · 공소청검사 · 공소연구관을 두고(안 제12조~제14조), 부 · 사무국 · 과 설치 근거를 두되 범죄정보 · 수사정보 · 전자정보의 수집 · 저장 · 분석 · 검증 전담 직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안 제15조제1항).

사. 지역공소청 · 지청 설치 및 지휘 체계

지역공소청장 · 지청장 및 차장 설치 근거와 직제(사무국 · 과)를 규정함(안 제16조~제19조).

아. 검사 임용 자격 · 결격 및 보직 절차

공소청장 자격요건(15년 이상 법조 경력 등)과 경력 합산 규정을 두고(안 제20조제1항~제2항),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 임명하며(안 제21조), 결격사유(금고 이상 형 등 및 특정기관 퇴직 후 2년 제한 등)를 규정하고(안 제22조), 검사의 임명 · 보직은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공소청장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23조).

자. 공소청장 후보추천위 및 인사위원회 등 인사통제 장치

추천위원회 구성(교섭단체 추천 몫 포함), 미추천 시 국회의장 같은 추천, 3인 이상 후보 추천 및 장관의 추천 존중을 규정하고(안 제24조제4항~제10항), 인사위원회 설치·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제1항~제6항).

차. 평정·적격심사 및 신분·정년 등 인사제도

근무평정 기준(불기소 항고·재정신청 인용률, 무죄판결률 등 포함) 마련·공개 및 인사 반영을 규정하고(안 제26조제1항~제4항), 검사 적격심사(7년 주기) 및 퇴직 건의 절차를 두며(안 제30조제1항~제6항), 정년(공소청장 65세, 검사 63세)을 정함(안 제33조).

카. 수사·공소 협력 및 적법성 통제(시정조치·요구권)

검사·사법경찰관 등 협력 의무와 신속 협력 원칙을 두고(안 제40조제1항~제3항), 검사의 수사요구 및 수사 과정 인권침해·수사권 남용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규정하며(안 제41조, 안 제42조제1항~제2항), 공소청장/지역공소청장이 부당 수사행위에 대해 사건중지·교체·이송·징계 등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타. 외부·절차 통제와 불복절차, 벌칙 및 경과조치

기소·불기소 및 영장청구 적정성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와 감찰관(외부 공개모집)을 두고(안 제44조제1항, 안 제45조제1항~제2항), 불기소처분 항고 절차(30일 등) 및 경정 절차를 정하며(안 제46조제1항~제5항), 정치관여죄·직권남용죄 및 공소시효 10년 특례를 규

정함(안 제49조, 안 제50조, 안 제51조). 또한 2026.10.2. 시행, 검찰  
청법 폐지 및 사무 승계·사건 이송·인력 전환 등 경과조치를 둠  
(부칙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2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소청의 조직, 직무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② 공소청의 위치와 지역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소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공소청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공소청 사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는 직무에 관하여 직무관할의 범위 내에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제9조(검사의 이의제기권) 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는 이의제기를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검사의 이의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각급 공소청의 공무원은 공소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 제2장 공소청

제11조(공소청장) ①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둔다.

② 공소청장은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

③ 공소청장은 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공소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공소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공소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⑤ 공소청장은 제24조에 따른 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공소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⑦ 공소청장의 대우는 차관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차장) ① 공소청에 차장을 둔다.

② 차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차장은 공소청장을 보좌하며, 공소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공소청 검사) 공소청에 공소청 검사를 둔다.

제14조(공소연구관) ① 공소청에 공소연구관을 둔다.

② 공소연구관은 검사로 보한다.

③ 공소연구관은 공소청장을 보좌하고 공소청 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제15조(직제) ① 공소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分掌事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범죄정보, 수사정보 및 전자정보의 수집·저장·분석·검증을 전담하는 직제는 둘 수 없다.

② 그 밖에 직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지역공소청 및 지청

제16조(지역공소청장) ① 지역공소청에 지역공소청장을 둔다.

② 지역공소청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지역공소청장은 그 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지청장) ① 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② 지청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지청장은 지역공소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지역공소청과 지청의 차장) ① 지역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청에 차장을 둔다.

② 차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차장은 소속 지역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역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9조(직제) 지역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검사

제20조(공소청장의 자격과 임명) ① 공소청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제21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소청 검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종사한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3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소청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제24조(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공소청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공소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차관

2. 법원행정처 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소속된 정당이 없을 경우 의석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한 사람 1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한 사람 1명

6.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7.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8.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인 검사 1명

9.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명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위원을 추천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

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⑨ 추천위원회는 공소청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⑩ 법무부장관은 공소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⑪ 추천위원회가 제9항에 따라 공소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⑫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소청인사위원회) ① 검사의 임용, 보직,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소청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에서 정한 인원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1. 검사 3명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다만, 제4항제2호의 검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3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소청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소청 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 중 근무성적 평정기준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정신청 인용률 및 인용사유, 무죄판결률 및 무죄사유 등

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투명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⑤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정원 및 보수)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8조(신분보장) 검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파면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여 파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는다.

제29조(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2.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휴직 기간 및 그 기간의 보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공소청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및 의석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공소청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6.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검사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금액과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정년) 공소청장의 정년은 65세, 공소청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34조(정치 관여 금지 등) 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

위

3.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4.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사건에 대하여 유리 또는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처분을 약속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6.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8.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 제35조(기타 금지사항)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2.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행위

제36조(검사의 파견 제한 등) ① 검사는 공소청 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협력을 위하여 범죄수사 또는 탈법행위의 단속·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에 파견되거나 그와 관련된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

2. 형사사법에 관한 국제협력 또는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연구·자문을 위하여 재외공관,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 등에 파견되거나 그와 관련된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

3. 그 밖에 검사의 파견 또는 겸임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 제5장 공소청 직원

제37조(공소청 직원) 공소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이하 “공소청 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공소청 직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소청 직원의 보직) ① 공소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소청장이나 지역공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공소청 직원의 정원) 공소청 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수사 · 공소 협력 및 적법성 통제 등

제40조(협력 의무)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 범죄 혐의에 관한 고발 및 그와 관련된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 소속 공무원은 고발, 조사,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신속히 협력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특히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협력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수사요구) 검사는 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2조(시정조치) ① 검사는 범죄수사 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정황을 인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은 검사의 시정조치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시정조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검사의 시정조치 및 그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소청장 및 지역공소청장의 조치 등) ① 공소청장 및 지역공소청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임용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사건 수사 중지 요구
  2. 사건 관여 사법경찰관리의 교체 요구
  3. 다른 경찰관서 또는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다)으로의 사건 이송 요구
  4. 사건 관여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전보, 파견,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 요구
  5. 사건 관여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 요구
  6. 사건 관여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요구
- ② 사건 관여 사법경찰관리의 임용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수

용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실을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인사기록에 기재하고,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소청장 및 지역공소청장의 요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장 기소영장심의위원회 및 공소청 감찰관

제44조(기소영장심의위원회) ① 기소 및 불기소와 영장청구 등에 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소청 및 지역공소청에 기소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그 밖에 기소영장심의위원회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공소청 감찰관) ① 공소청에 대한 감찰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감찰관을 둔다.

② 공소청 감찰관은 공소청 외부로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③ 그 밖에 공소청 감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장 항고

- 제46조(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역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 ② 공소청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역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소청 검사는 지역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 ⑤ 제3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장 보칙

제47조(조직 및 운영) ①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소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소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공소청 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제10장 벌칙

제49조(정치 관여죄) ① 제34조(정치 관여 금지 등)를 위반하여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0조(직권남용죄) ① 공소청의 검사 또는 소속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49조(정치 관여죄) 및 제50조(직권남용죄)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검찰청법」은 폐지한다.

제3조(공소청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공소청 설치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특례) 대통령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따른 검찰총장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검찰청(그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관 사무 중 이 법에 따른 공소청(그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관 사무는 공소청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소청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청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행한 처분·행위 등이나 검찰청에 대한 처분·행위 등 중 제1항에 따라 공소청이 승계하는 사무에 관한 처분·행위 등은 각각 공소청의 처분·행위 등 또는 공소청에 대한 처분·행위 등으로 본다.

제6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휴직기간은 종전의 「검찰청법」 제38조의2에 따른다.

제7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검찰청 소관 사무 중 공소청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또는 검찰청의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또는 공소청의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